



「2024년 시험대비」

세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해설(3)

| 김용민 교수 |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난이도 : 중]

1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와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 ③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한다.
- ④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정답 : ②

출제영역 : 부가가치세법

- ②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난이도 : 중]

1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영세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 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음식·숙박 등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금지급조건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본다.
- ④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본다.

정답 : ④

출제영역 : 부가가치세법

③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음식·숙박 등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본다.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난이도 : 중]

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역의 자가 공급(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③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 ④

출제영역 : 부가가치세법

- ① 용역의 자가 공급(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③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난이도 : 하]

15. 국세기본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 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 ④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④

출제영역 : 국세기본법

- ④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난이도 : 중]

16.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 ③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부양가족의 경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정답 : ①

출제영역 : 소득세법

- ①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QR코드를 통해 "체계적 세법강의!! 세법 김용민교수의 강의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